

『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3월 2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4월 5일

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담당관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-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공무원 당
연직이사 조정
- 당연직이사 중 위탁업무 비중이 낮은 건설도시국장을 위탁
비중이 높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여 공단업무 지
도감독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당연직이사 조정(안 제9조제4항)

- 행정지원국장 ⇒ 삭제함
- 건설도시국장 ⇒ 상하수도사업소장

라. 참고사항

-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(행정자치부, 2004. 5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비상임 이사 정수의 50%이상을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로 충원토록 되어 있음
- 현재 비상임 이사 7명 중 4명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당연직이사 1명을 감축하면서
- 업무 비중이 낮은 「행정지원국장」을 제외시키고 위탁업무 비중이 낮은 「건설도시국장」을 「상하수도사업소장」으로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